

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(제44조의2제2호 관련)

1.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

가. 설치

- 1) SM1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모든 자동차에 설치 가능하며, SM2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승용자동차에 설치할 것
- 2) 길이 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별표 6의11 제1호나목과 별표 6의14 제1호나목의 관측각도를 만족할 경우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.

나. 설치위치

1) 높이

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,500밀리미터 이내일 것. 다만,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,1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.

2) 길이

가) 1개 이상의 옆면표시등을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부에 설치하고,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,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

나) 인접하는 2개 등화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내일 것.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4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.

다) 옆면표시등은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,00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

라) 자동차 길이가 6미터이내인 경우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, 뒷부분 또는 앞뒤 부분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.

다. 관측각도

1) 수평각

가)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45도·뒷측 4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. 다만, 추가로 설치되는 경우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.

나) 별표 6의14의 제1호나목 및 별표6의17의 제1호다목의 관측각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옆면표시등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및 뒷측 45도, 자동차 중심방향에서 3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

2) 수직각

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·하측 10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할 것. 다만,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이내에 설치된 경우 하측 관측각도는 5도 이내에서 관측 가능하여야 한다.

라. 옆면표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

마. 작동조건

길이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.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동일한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하는 구조일 것

바. 표시장치

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로 대체가 가능하다.

사. 추가적인 요구사항

- 1) 옆면표시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, 뒷면안개등 또는 제동등과 상호 결합되어 점등된 경우에는 옆면표시등의 광학적 특성의 변경도 가능할 것
- 2) 뒷부분 옆면표시등이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하는 구조인 경우 호박색 일 것

2. 옆면표시등의 광도기준

가. 최대 및 최소광도

구 분	측정점 및 측정구역(각도)	광도(칸델라)
SM1 형식	10U ~ 10D-45L ~ 45R	25 이하
SM2 형식	10U ~ 10D-30L ~ 30R	25 이하

나.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

구 분	측정점 및 측정구역(각도)	광도(칸델라)
SM1 형식	H-V	4 이상
	10U ~ 10D-45L ~ 45R	0.6 이상
SM2 형식	H-V	0.6 이상
	10U ~ 10D-30L ~ 30R	0.6 이상

주)

양산자동차 옆면표시등의 광도기준은 ±20퍼센트 이내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. 다만, 4개의 시험품 중 1개 이상은 제2호가목 및 나목을 만족해야 한다.